

대전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1나11385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1나113858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가단11517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현

피고, 항소인1. 주식회사 A

2. B

3. C

피고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안 담당변호사 유달준

변론 종결2023. 4. 28.

판결 선고2023. 6. 2.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가단11517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2023. 6. 2.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6%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체결한 2020. 3. 30.자 매매계약을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20. 3. 18.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20. 3. 18.부터 2021. 5. 12.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위 합계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8. 5. 1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과 대출금 2년 거치 3년 상환, 이자를 연 3.18%(매월마다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지급함)로 하되 채무 일부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8. 5. 14. 피고 회사에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0. 3. 17.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2020. 5. 14. 밀린 연체금 및 이자를 마지막으로 납부하였다.

나. 피고 B은 2020. 3. 30. 소유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 2020. 4.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은 합계 2억 44,779,700원이다(4쪽 표). 반면 소극재산은 ① D은행 900만 원의 대출금채무, ② E조합 1억 15,814,623원의 대출금채무, ③ F 70,006,780원의 대출금채무, ④ (주)G 3억 5,600만 원의 대출금채무 및 보증채무 합계 5억 91,067,403원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

1	충북 진천군 H 전(별지 1항)	77,049,100원	갑6-1, 을13-1
2	충북 진천군 I 전(별지 2항)	51,128,000원	갑6-2, 을13-2
3	충북 진천군 J 임야(별지 3항)	10,602,600원	갑6-3, 을13-3
4	청주시 흥덕구 K 아파트 L호(1/2지분)	62,000,000원	갑8-1, 9-1
5	충북 진천군 M 전	6,000,000원	갑8-2, 9-2
6	청주시 흥덕구 N 아파트 O호	38,000,000원	갑8-3, 을13-4
합계	244,779,700원		

라. 이 사건 매매 이전인 2016. 1.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G을 근저당권자, 피고 회사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4억 3,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이 사건 근저당권은 공동저당권으로 이 사건 매매 당시 공동담보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청주시 흥덕구 N아파트 O호(위 표 순번6)가 있었다.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 이후 2020. 4.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등기원인: 일부포기) 같은 날 채무자를 피고 C으로 하고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5호증, 을 제2, 4, 5, 7,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P에 대한 시가감정축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 회사, 피고 B)

피고 회사가 2020. 3. 17.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 일부를 기한에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이에 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적용되는 지연배상금률은 연 6%이고, 2020. 5. 14.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지급된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다(갑 제15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원고의 2021. 4. 1.자 준비서면 및 2023. 3. 22.자 준비서면, 2020. 8. 13.자 피고들 준비서면 참고).

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마지막 이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20. 5. 15.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2.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20. 3. 18.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 C)

가. 공동담보권 설정 부동산의 책임재산 범위

채무자가 처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처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처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책임재산 범위

을 제3호증,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2022. 9. 15.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4면, 2023. 1. 16.자 피고 준비서면 참조)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 당시인 2020. 3. 30.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3억 6,000만 원(3억 5,000만 원+1,0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6호증, 을 제2, 5,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C이 (주)G와 협의하여 1억 7,0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주)G에 입금하기로 하였고, 2022. 4. 8. (주)G에 이 사건 근저당채무 중 8,000만 원을 상환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든 증거와 더불어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일부포기'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8,000만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 관하여 피고 C이 1심에서 '8,000만 원'이라고 자백하였다가 항소심에서 '3억 5,000만 원' 또는 '3억 6,000만 원'을 주장하여 1심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자백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의 효력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재판상 자백이란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고,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액수는 주요사실인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한 자백이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원고는 1심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약 3억 6,000만 원'으로 추정했었고 이 법원에서는 정확한 금액 확인을 위해 증거신청을 하였을 뿐 피고 C의 8,000만 원 주장을 원용한 바도 없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자백취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액 3억 6,000만 원을 안분하여

본다.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138,779,700원(4쪽 표 순번1~3 가액 합산), 나머지 부동산의 가액은 38,000,000원(같은 표 순번6)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안분액은 계산상 282,615,549원이 된다(원 미만 버림).

[계산식] 3억 6,000만 원×[138,779,700원÷(138,779,700원+38,000,000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액수 282,615,549원이 부동산 가액 138,779,700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 부분이 없게 된다. 이를 처분한 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매매의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 회사, 피고 B의 일부 항소와 피고 C의 항소는 이유 있어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이효선

판사박상준

판사신지은

별지